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9.] [대통령령 제28579호, 2018.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 공공용 시설의 종류에 방재시설·기상시설 등을 추가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설치기준을 녹지 점용허가의 기준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 ○ 대통령령 제2857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취락지구"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8.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를 "취락지구"로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제3호의 구체적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철도"를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마.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자.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차.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며,"를 "잡종지인 토지로서"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별표 2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할 것
---------------	---------------------------------------------------------------------------------------------------

별표 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별표 2 제3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다. 실외체육시설</p>	<p>(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같이 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p>
<p>라. 청소년 수련시설</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p>
<p>마.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별표 2 제6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가)·(나)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축"을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垔)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9. 철도변 녹지에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